

의안번호	2200389
의 퇴 인	박대출 의원
회 답 일	2024.6.19.
추계번호	24E074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국회예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법률 제17757호 제4조, 제87조의2~ 제87조의27	○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 금융투자소득의 정의, 납세의무, 비과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금융투자소득금액의 계산, 세액의 계산, 예정신고와 납부, 확정신고와 납부, 결정·경정과 징수 및 환급에 관한 규정 삭제 등	—
	제88조, 제92조, 제94조, 제99조, 제102조~제105조, 제114조~제115조	○ 대주주·비상장·장외거래 주식 및 파생상품 소득 등에 대해 금융투자소득세 대신 양도소득세를 과세 - 세율, 기준시가 산정, 구분계산 등의 조문 정비	
	제127조~제129조, 제148조의2, 제148조의3, 제155조의2, 제164조 등	○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관련 규정 삭제 등	

II.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미첨부 근거 규정
1	법률 제17757호 제4조, 제87조의2~ 제87조의27, 제88조, 제92조, 제94조, 제99조, 제102조~제105조, 제114조~제115조, 제127조~제129조, 제148조의2, 제148조의3, 제155조의2, 제164조 등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2. 상세 사유

- 2025년 1월 1일 시행이 예정된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할 경우, 2025년 이후 소득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
 -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채권·집합투자증권·파생상품·파생결합증권 등의 금융투자상품에서 발생한 소득을 포괄하여 과세하는 제도
 - － (과세표준) 금융투자소득액에서 기본공제액 및 이월결손금 등을 제외하여 산정
 - － (양도손실의 처리) 금융투자소득 내 손익과 손실 간 통산이 허용되며, 공제되지 않은 결손금은 5년 간 이월하여 공제 가능
 - － (세율) 과세표준 3억원 이하는 20%, 3억원 초과분은 25% 적용

[표 1] 현행 금융투자소득세 과세체계

	내 용
과세방법	• 분류과세
과세대상	• 금융투자상품에서 발생하는 모든 소득에 대해 포괄적으로 과세 － 주식등, 채권등, 투자계약증권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집합투자증권의 환매·양도로 발생하는 이익, 파생결합증권으로 부터의 이익 등
과세표준	• 금융투자소득액 - 기본공제 - 금융투자 이월결손금(이월공제 5년 허용)
손익통산	• 금융투자소득으로부터의 손익 및 손실 간 상계 허용
기본공제	• (국내 상장주식 등) 5천만원 • (기타: 해외주식, 비상장주식, 채권, 파생) 250만원
세율	• 과세표준 3억원 이하 20%, 3억원 초과분 25%

- 현행 제도에 따라 2025년부터 금융투자소득세가 시행될 경우 금융투자상품에 대해 종전까지 과세되지 않던 소득 및 배당(이자)소득 등이 금융투자소득으로 일원화되면서 소득세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었음
- 따라서 개정안과 같이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할 경우 2025년 이후 소득세수는 현행 제도 대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표 2]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전 후 금융소득의 구분

현행 제도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후
비과세	소액주주 상장주식 양도소득, 채권 양도소득, 집합투자기구(상장주식 양도) 이익, 주식형 ETF 양도소득, 파생결합증권(ELS, DLS, ELB, DLB 등) 양도소득, 파생상품(주가지수형 외) 양도소득 등	금융투자소득
배당(이자) 소득	집합투자기구(채권양도, 주식 환매·양도 등) 이익, 파생결합증권(ELS, DLS, ETN) 이익 등	
양도소득	대주주 상장주식, 파생결합증권(ELW)의 이익, 파생상품(주가지수형) 양도소득 등	

□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 대한 세수효과를 추계하기 위해서는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시 세수 규모와 현행 제도가 유지되는 경우 세수 규모를 추정하기 위한 개인투자자 자료 등이 필요

-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시 세수 규모를 추정하기 위해서는 연간 과세대상 인원 수, 과세대상 금액을 추정할 수 있는 개인투자자의 인별 자료가 필요함
 - 세부적으로 인별로 기본공제액을 초과하는 금융투자소득 금액(3억원 초과분 구분), 금융투자소득으로부터의 손익·손실을 상계한 과거 5년간의 이월결손금 규모, 그 외 필요경비 등의 정보가 필요
- 현행 제도가 유지될 경우 세수 규모를 추정하기 위해서는 대주주에 대한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등 현행 과세대상 금액을 추정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함
 - 2024년 1월부터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대주주의 지분율 요건이 10%원에서 50%원으로 상향되었기 때문에 이를 반영할 필요

[표 3]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대주주 요건 변화 연혁

시행일	코스피		코스닥	
	지분율	보유액	지분율	보유액
2016.4.1.	1%	25억원	2%	20억원
2018.4.1.		15억원		15억원
2020.4.1.		10억원		10억원
2024.1.1.		50억원		50억원

주: 대주주 요건은 직전연도 말일 기준임

- 다만 현 시점에서는 개인투자자의 금융투자소득 등을 예측할 수 있는 최신 자료가 부재해 개정안에 따른 세수효과를 합리적으로 추계하기 어려움
- 최근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된 상황에서 금융투자소득 금액 등을 추정하기 위한 개인투자자 관련 최신 정보가 필요하지만, 부재한 상황임
 - 대표적 금융투자상품인 상장주식의 경우 2020년 개인투자자의 매도금액이 크게 증가한 이후 변동성도 확대된 상황으로, 금융투자소득 금액을 결정하는 양도가액·취득금액 및 과거 5년간의 이월결손금 규모의 변동성 역시 확대되었을 것으로 예상

[표 4] 개인투자자의 상장주식 매도현황

(단위: 조원, %)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개인투자자 매도금액	861	1,488	1,304	1,390	1,824	1,485	4,324	4,904	2,564	3,274
개인투자자 매도금액 비중	59.0	67.6	66.9	63.5	65.1	64.9	75.7	72.5	65.5	68.1

주: 코스피·코스닥·코넥스 거래실적 기준임

자료: 한국거래소 정보데이터시스템(data.krx.co.kr)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현행 상장주식 양도소득세의 경우에도 2020년 신고규모가 확대된 이후 변동성이 확대된 상황에서 2022년까지의 신고자료만으로 이후의 과세대상 인원 및 양도차익 규모의 변동성을 반영하기 어려움
 -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대주주의 보유액 규모별 자료가 부재한 상황에서, 2024년부터 적용되는 대주주 기준 축소 대상(보유액 기준 10억원~50억원 구간) 개인투자자의 정보를 반영하기 어려운 상황

[표 5]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현황

(단위: 건, 억원)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신고자산 건수(A)	3,808	4,456	5,611	6,420	7,837	11,384	27,163	29,264	14,956
양도차익(B)	35,346	55,773	38,311	58,177	58,827	43,973	72,871	91,690	72,585
1건당 양도차익(B/A)	9.3	12.5	6.8	9.1	7.5	3.9	2.7	3.1	4.9

주: 예정·확정신고를 합산하여 산출함

자료: 국세청, 연도별 국세통계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Ⅲ. 부대의견

☐ 없음

Ⅳ.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세제분석1과	김효경	박연서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김효경	02-6788-4647	hkkim@assembly.go.kr

참고자료

- 참고로 국회예산정책처(2022)¹⁾는 2025년 금융투자소득세를 시행 시 예상되는 세수 증가 규모를 2025년 8,066억원, 2026년 1조 6,131억원 수준으로 추정한 바 있음
 - 세수 변화는 금융투자소득세 추계액에서 현행 제도인 대주주 양도소득세수를 차감하여 산출함
 - 당시 금융투자소득세액은 금융투자소득세 과세체계 도입 시 2008~2017년 국내 증권사의 개인투자자 상장주식 거래자료를 바탕으로 과거 평균 금융투자소득세액을 추정한 금액(4조 2,242억원)을 활용함²⁾
 - 채권, 해외주식 등에 대한 양도소득은 개인들의 거래자료를 확보하기 어려워 반영하지 않음
 - 기존 제도가 유지될 경우 대주주 상장주식 양도소득세수는 2020년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신고금액(당시 보유액 기준 10억원) 및 이전의 제도변화 시 세수변화 등에 대한 가정을 적용하여 추정(2조 7,123억원)
 - 국내 주식형 펀드 및 ETF에 대해서는 과거(2017~2019년) 상장주식 양도소득세의 연간 매도금액 대비 비율 등을 감안해 상장주식 세수효과의 6.7% 수준으로 반영
 - 도입 첫 해의 세수는 반기별 원천징수를 전제하여 반영

1) 국회예산정책처, 「2022년 세법개정안 분석」, 2022.11.

2) 국회예산정책처, 「2021년도 총수입 예산안 분석」, 2020.10.